

[별표2]

소방선박 승선을 위한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총톤수			
		25톤미만	25톤이상 50톤미만	50톤 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주기관 출력			
		750KW 미만	750KW이상 1500KW미만	1500KW이상 3000KW미만	3000KW이상
대장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이상으로 소방정대 또는 수난구조대 외의 외근부서 3년 이상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으로 소방정대 또는 수난구조대 외의 외근부서 3년 이상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이상으로 소방정대 또는 수난구조대 외의 외근부서 3년 이상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이상으로 소방정대 또는 수난구조대 외의 외근부서 3년 이상
항해부	선장	6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5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5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5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항해사		6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6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6급 항해사 이상 및 4급이상의 통신사 면허
기관부	기관장	6급 기관사 이상	5급 기관사 이상	4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기관사		6급 기관사 이상	5급 기관사 이상	4급 기관사 이상
화재 구조 구급	진압				
	구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구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 ※ 1. 다만, 항해사, 기관사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당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중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는 전파전자기능사 자격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5톤 미만 선박의 자격기준은 소형선박조종사로 한다.